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69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구성 및 취지	3
2. 주요내용별 검토	5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5
나. 법인 및 정관사업(안 제3조, 제4조)	7
다. 조직 및 구성(안 제5조), 중앙회 등의 지도·감독(안 제9조), 포상 (안 제10조)	8
라. 사업(안 제6조)	10
마. 경비 등의 지원(안 제7조)	11
바. 복장·장비 등(안 제8조)	12
사. 금지의무(안 제11조), 벌칙(안 제13조)	13
아.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안 제12조), 과태료(안 제14조)	15
※ 참고자료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08. 08.
3. 회부연월일 : 2024. 08. 0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봉사단체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 활동, 수험생 수송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경찰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왔음.

이러한 모범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역 교통안전 및 거리질서유지 확보 차원에서 복장·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일반적인 자원봉사조직과는 달리 모범운전자는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으로 함(안 제3조).

나. 시·도모범운전자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중앙회등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 활동 등의 사업을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회 등의 보험가입, 복장·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범운전자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와 중앙회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구성 및 취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출퇴근 시간대 교차로 및 혼잡한 도로에서 교통안전 봉사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해 왔음.

제정안은 현재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근거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여 법인 설립, 정관, 조직 및 구성 등을 법률로 정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에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본칙 14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제1조), 조직 및 구성(제5조), 사업(제6조) 경비 등의 지원(제7조) 등이 있음.

<제정안의 구성>

구분		규정 내용	비고
본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법인	
	제4조	정관	
	제5조	조직 및 구성	
	제6조	사업	
	제7조	경비 등의지원	
	제8조	복장·장비 등	
	제9조	중앙회등의 지도·감독	

구분		규정 내용	비고
	제10조	포상	
	제11조	금지의무	
	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3조	벌칙	
	제14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정안은 모범운전자의交通安全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증진하고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①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그동안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봉사활동을 이어 온 민간단체로서 그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② 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지원은 이미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할 수 있어 제정 실익이 크지 않은 것은 아닌지, ③ 기타 민간 자원봉사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특별히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하여만 별도의 근거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관련된 사항을 독립적인 법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관계부처 및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주요 내용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증진하고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란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1조는 제정안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봉사

활동을 증진하고 바람직한 교통문화의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제2조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 정관」 제5조¹⁾ 중 제1항의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정관 제5조 제2항은 「도로교통법」 제146조²⁾에 무사고 운전자의 의미가 이미 규정되어 있어 추가로 법률에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정관 제5조 제3항은 연합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정관에 규정할 사항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 1) 「전국모범운전자연합 정관」 제 5 조 (회원의 구성) ① 본회 회원의 구성은 도로교통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봉사활동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모범운전자 회원으로 인정)하는 자 이어야 한다.”
- ② “무사고운전자”는 사업용 차량을 10년 이상 운전하여 경찰청장이 수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가. 10년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 (교통 성실장)
 - 나. 15년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 (교통 발전장)
 - 다. 20년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 (교통 질서장)
 - 라. 25년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 (교통 삼색장)
 - 마. 30년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 (교통 안전장)
- ③ 현 주소지와 근무지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이사포함)해당 회원은 한곳을 소속지회(지부)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주소지에서의 지위와 권리 선거의 피선거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2) 「도로교통법」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①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 중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과 정부의 표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경찰 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장의 종류, 표시장 수여의 대상, 그 밖에 표시장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나. 법인 및 정관(안 제3조, 제4조)

제 정 안

제3조(법인) ①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중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중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중양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정관) 중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2조, 제3조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중앙회”라고 함)를 사단법인으로 하고(안 제3조), 정관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다. 조직 및 구성(안 제5조), 중앙회 등의 지도·감독(안 제9조), 포상(안 제10조)

제 정 안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중앙회의 건전한 발전과 모범운전자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군·구에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모범운전자회에는 회장, 총무 및 회원을 둔다. ③ 중앙회·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앙회등의 지도·감독) ① 교통질서유지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 시·도경찰청장은 연합회, 경찰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감독한다. ②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은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와 중앙회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정안 제5조는 모범운전자회의 조직을 시·군·구를 최소 단위로하여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모범운전자연합회를(이하 ‘연합회’)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전국모범운전자연합 정관」에 따르면 현재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 산하에 연합회를 두고, 각 시·도경찰청 산하에 지부를 두며, 각 경찰서 산하에 지회를 두고 있는데, 제정안이 중앙회를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안 제3조제2항), 경찰청장이 중앙회를, 시·도경찰청장이 연합회를, 경찰서장이 모범운전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안 제9조) 지도·감독 체계에 맞게 모범운전자회의 조직 단위를 경찰서로, 연합회의 조직 단위를 시·도경찰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라. 사업(제6조)

제 정 안
제6조(사업) 중앙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활동 2.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수집 및 건의 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4. 교통행정 캠페인 행사 5.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정안 제6조는 중앙회의 사업으로 ①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활동, ②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수집 및 건의, ③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④ 교통행정 캠페인 행사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에 규정된 네 종류의 사업은 현재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상 규정된 아홉 종류의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³⁾ 현재 정관상 실시 중인 나머지 사업 역시 제정안 제5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3) 「전국모범운전자연합 정관」 제 6 조 (사업) 본 연합회는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실시한다.
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 활동
나. 교통사고 예방 관련행사 및 유인물 제작 배포
다.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수집 및 건의
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마.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행사
바. 불우 운전자 가족 장학금 지급 행사
사. 경로잔치 및 노인 효도관광 행사
아. 교통행정 캠페인 행사
자. 무선호출 서비스로 고객에 봉사 뺑소니사고, 안전사고, 긴급 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마. 경비 등의 지원(안 제7조)

제 정 안
제7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회등이 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 제7조는 현행 「도로교통법」제5조의3⁴⁾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가입 지원, 복장·장비 구입 지원등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규정임.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뿐 아니라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⁵⁾ 「자원봉사활동기본법」⁶⁾에 근거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4) 「도로교통법」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소요경비나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바. 복장·장비 등(안 제8조)

제 정 안
제8조(복장·장비 등) ① 모범운전자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때에는 교통안전 봉사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모범운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모범운전자는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범운전자 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범운전자 차량에 행정안전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생략)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 제17조 (생략)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모범운전자의 신분증, 복장, 경광등 및 차량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의 복장과 장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경찰을 보조하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명확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임.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은 국민과의 접점이 많고 영향력이 큰 활동이므로 활동 시 복장 착용 및 신분증 소지 의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세부적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사. 금지의무(안 제11조), 벌칙(안 제13조)

제 정 안
제11조(금지의무) ① 모범운전자는 중앙회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중앙회등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중앙회등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② 모범운전자와 중앙회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생략)

제13조(벌칙)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제정안 제11조는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기부금품 모집·영리행위 금지 등의 일반적인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중앙회·연합회 등이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는 선거운동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⁷⁾에 따른 벌칙규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7)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략)

11.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하거나 하게 한 자

12. ~ 20. (생략)

② ~ ⑤ (생략)

현행 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은 회원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정안과 같이 중앙회가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전국적인 조직이 될 경우 봉사단체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①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② 영리목적으로 중앙회등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③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등 그 밖에 중앙회 등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해 보임.

뿐만 아니라 그 명이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중앙회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아.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안 제12조), 과태료(안 제14조)

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중앙회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고하지 않은 단체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시·도모범운전자연합회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모범운전자 또는 중앙회등이 아니면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벌칙) (생략)

제14조(과태료) ① 제12조를 위반하여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중앙회, 연합회 등이 경찰의 교통질서 유지 기능을 보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유사단체 난립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5

[참고자료]

< 현행 모범운전자회 현황 >

구분	모범운전자회
법적 근거	▶ (설립) 도교법 제5조의2 ▶ (지원) 도교법 제5조의3,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 지침 ▶ (감독) 행안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 지침
조직 현황	▶ 조직 : 1개 연합회(경찰청) 18개 지부 (시도경찰청) 259개 지회(경찰서) ▶ 회원 : 모범운전자 23,276명
회원 자격	▶ 10년 이상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 받았거나 2년 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무사고운전자 中 - 교통안전 봉사활동 희망자 대상 경찰서장(심사위원회)이 선발
법적 권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활동
활동 및 관리	▶ 월4회 이상(회당 2시간이상) 교통보조 근무 ▶ 분기 1회 이상 근무상황 점검(경찰서) ▶ 교통안전지도 및 교통경찰 보조근무 - 교차로 러시(아침.저녁)근무 지원 - 교통사고 및 재난발생시 지원 - 민방위 훈련 및 각 종 행사시 지원